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과징금부과 고시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규정

1) 일반 원칙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되,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① 위반사업자가 보복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한 때

②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주체요건)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하거나 과급효과가 큰 위반행위(행위요건)를 한 때

* **대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함

〈표1〉 원칙적 과징금 부과요건

주체요건	행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비중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하도급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자 ○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부당 감액행위 ○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 위반행위의 수가 2개인 경우로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A에 속하고 2006년도의 하도급거래비율이 15%인甲사가 2007년 9월에 자신의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에게 종전 대비 10%씩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

2. 과징금액 산정절차

	기본과징금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최저 1%~최고 8%)을 곱하여 산정 -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등 부당이득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이 위반금액보다 적으면 당해 위반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함

〈표2〉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구분	부과점수					
	80점 초과	70점초과 80점까지	60점초과 70점까지	50점초과 60점까지	40점초과 50점까지	40점까지
과징금 부과율	8%	7%	5%	3%	2%	1%

* 부과점수는 위반행위 유형(40%), 위반금액의 비율(20%), 위반행위의 수(20%), 과거의 위반전력(20%)을 종합하여 산정함

〈표3〉 위반금액 산정기준

부당이득 등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이 곤란한 위반행위	위반금액 산정기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물품 등의 구매강제행위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액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행위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액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행위	경제적 이익의 부당수령 금액

조정 과징금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과징금의 50%이내에서 조정 - 위반행위 자진시정, 현금성결제 우수,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 사용 등의 경우에 감경 - 조사거부·방해·기피 및 보복, 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는 감경 제외 - 범위반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한 경우 조정과징금을 차등 적용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2배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4배

〈표4〉 감경사유 및 비율

감경사유	요건	비율
① 위반행위 자진시정	-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시정한 경우	40% 이내
	-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시정한 경우	20% 이내
② 현금성결제 우수	-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20% 이내
	-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 100%미만인 경우	10% 이내
③ 상생협력적 계약체결모델 사용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이내
④ 협력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사용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이내
⑤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 “하도급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이내

〈표5〉 감경적용 제외 사유

감경 제외 사유	요 건
① 조사거부·방해·기피 등	- 위반사업자 또는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② 보복조치·탈법행위	- 위반사업자가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서면미교부행위	- 과거 3년간 법 제3조(서면미교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경고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서면미교부행위를 한 경우

부과 과징금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 위반행위의 과급효과,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과징금 납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기타 고려사항

조정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가능

1백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



새우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다?

새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해산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경우 참치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해산물이다. 하지만 지난 1980년대에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보고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새우를 꺼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록펠러대학과 하버드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 두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9주에 걸쳐 건강한 성인 18명에게 새우 위주의 식사와 달걀 위주의 식사를 번갈아가며 해보도록 했다. 그 결과 새우나 달걀을 먹으면 모두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지만, 새우에는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이렇게 막힌 혈관을 청소해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새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주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해가 없다는 것이다. 록펠러대학의 디 올리베이라(De Oliveira)박사는 “특히 젊은 새우는 지방이 적어 쇠고기 등 육식 대용으로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조언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